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중장기증권투자신탁[채권]

□ **변경 사유** : ① I클래스 가입자격 확대

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

④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 (증권대여위험, 증권차입위험)

⑤ 최근 기준으로 기재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2. 9. 1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b>요약정보</b>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기준으로 기재	-	<u>2022.7.29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2.28 기준</u>	<u>2022.7.31 기준</u>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I클래스 가입자격 확대	〈신 설〉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	<b>법시행령 제 10조제 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·제 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b>

**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**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업데이트	〈신 설〉	<u>2022.09.01 : I클래스 가입자격 확대</u>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2.28 기준</u>	<u>2022. 7. 31 기준</u>
가. 운용전문인력			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2.28 기준</u>	<u>2022. 7. 31 기준</u>
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I클래스 가입자격 확대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 (I) : 〈신 설〉 집합투자기구,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 (I) : <b>법시행령 제 10조제 2항</b>



나. 종류형 구조		최초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	<u>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·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</u> , 집합투자기구, 최초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내국법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 투자신탁[채권] 2) 자산유동화 증권 : (생 략) ▶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	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 투자신탁[채권] 2) 자산유동화 증권 : (현행과 같음) ▶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 투자신탁[채권] 2) 동일종목 투자 : 가) (생 략) 나) (생 략) (1) (생 략) 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(생 략)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</u>	-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 모 투자신탁[채권] 2) 동일종목 투자 :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(현행과 같음) (1) (현행과 같음) 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(현행과 같음)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

		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	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	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기재 보완	〈신 설〉	<u>증권대여위험 :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,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 <u>증권차입위험 :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, 차입자산을 공매도(short selling)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,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(매도가-매수가)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I클래스 가입자격 확대	1) (생략) 2) 종류별 매입자격 :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 ① ~ ③ (생략)	1) (현행과 같음) 2) 종류별 매입자격 :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		④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I):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	④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고액(I): <u>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·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</u> ,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-  주 3)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<신 설>  [직전 회계연도 : 2021.02.12~2022.02.11] <신 설>	<u>2022.7.29 기준</u>  주 3)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,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<u>이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11,709,822 원입니다.</u>  [직전 회계연도 : 2021.02.12~2022.02.11] <u>*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: 주식·채권·수익증권·파생상품·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(단, 세 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)</u>

			<p>주 6) 금융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, 직전 회계연도에 금융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</p> <p>[직전 회계연도 : 2021.02.12~2022.02.11]</p>
--	--	--	---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2.28 기준</u>	<u>2022.7.31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3 기(2020.12.31)</u> <u>제 22 기(2019.12.31)</u>	<u>제 24 기(2021.12.31)</u> <u>제 23 기(2020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2.2.28 기준</u>	<u>2022.7.31 기준</u>
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주요 업무 (생략)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	(1) 주요 업무 (생략)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